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김석규 의원)

의안 번호	6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김석규, 정숙남, 공유신,
송은영 의원(4명)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주민청구조례안의 의원발의조례안 심사절차 준용 및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을 규정
- 상임위원회 심사시 대표자의 청구 취지 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 요청 규정
- 주민청구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시 대표자에게 알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폐기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56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폐기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u></p> <p><u>②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u></p> <p><u>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관 련 법 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